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3. 제안이유

충북수산파크 인지도 향상 및 전시·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존속 유지 필요에 따라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 및 위원회 등 명칭변경(안 제1조~제8조, 제10조, 제13조·제14조, 제5장, 제18조~제20조, 제25조·제26조)
 - “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단지” 를 “충북수산파크” 로 변경
-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제19조)
 - “2025년 12월 31일까지” 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로 조정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충청북도는 지난 '23년 9월 기존의 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단지의 명칭이 길고 어려워 이를 대체 할만한 부제를 만들어 인지도 제고 및 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모를 진행하였음
- 이에 따라 '충북수산파크' 라는 명칭이 부제로 선정되어 입간판 등 모든 홍보에 해당 부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조례에 따른 정식 명칭은 '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단지' 로 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 한편, 본 조례에서는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 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향후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유지를 위한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함
- 이에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충북수산파크' 로의 명칭 변경과 운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제명의 개정과 안 제1조~제8조, 제10조, 제13조·제14조, 제5장, 제18조, 제20조, 제25조·제26조는 기존의 명칭인 '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단지' 를 '충북수산파크'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9조는 “충북수산파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인지도 향상 및 전시·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존속 유지로 효율적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타당성)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명칭 변경 및 존속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명칭 변경을 통해 친숙한 이미지 형성으로 인지도 상승이 기대되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충북수산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충북수산파크가 생산·가공, 유통·소비, 체험·관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및 홍보가 필요함